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621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462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402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이교범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래

변론 종결2019. 1. 23.

판결 선고2019. 2.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2402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11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을가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①의 내용을, 제4면 제15행 중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다음 ②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마. 기술보증기금은 2017. 12. 1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25564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6.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나73379)가 2018. 12. 18.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02887)에 계속중이다.』

②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B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12. 7. 접수 제1113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이원호

판사신동호

별지